

# 헌법집중 Keynote(제3판) 추록


P 070 I. (1) 두문자 상자(“사 기 기 법”) 추가

 두문자  
사 기 기 법

P 110 III. 본문 ③ 내용 대체

③ 헌법상 ‘권한대행사유 판단주체’, ‘권한대행기간’, ‘권한대행범위’에 관해서는 **규정이 없다.**

P 111 2. 본문 ③ 내용 대체 (2025. 7. 계엄법 개정\_거주·이전에 대한 특별조치권 삭제)

 두문자  
영언법정재  
(거) 단비상

③ **비상**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**영장제도**, **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**, **정부나 법원의 권한**(헌법 제77조 제3항) 및 국민의 **재산**, **단체행동**(계엄법 제9조 제1항·제3항)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, 계엄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**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한 때에는** 대통령은 지체없이 **계엄을 해제하여야** 하며(헌법 제77조 제5항, 계엄법 제11조 제1항), 계엄을 선포할 때뿐만 아니라 **계엄을 해제할 때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** 거쳐야 한다(헌법 제89조 제5호).

P 118 III. 단락 본문 둘째 줄 내용 대체 (2025년 선고 헌법재판소 판례 반영)

직무감찰은 직무수행의 **합법성과 합목적성**을 조사하여 행정기관의 향상을 도모(**적극적** 행정감찰)하고 직원의 비위를 **척결(소극적 비위감찰)**하는 것으로,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에 기초한 **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**인바,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**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**에 소속한 공무원을 **직무감찰 대상**에서 제외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**예시적·확인적 규정**에 불과하며,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(2025.2.27. 2023헌라5 등).